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의사항 등 안내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

- 목 차 -

1	[금융위]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
2	[금융위]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	[금융위] 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4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5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최
6	[금융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5.13. 국무회의)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7	[금융위] 7.22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강화
8	[금융위] 회계부정 신고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9	[금감원]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10	[금감원]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11	[금감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12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13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14	[금감원] ‘24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15	[금감원]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16	[금감원]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17	[회계기준원] ‘25.3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18	[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19	[회계기준원] '25.6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20	[한공회] 2024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21	[한공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22	[한공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23	[한공회] 2025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6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익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5.2.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동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승 전력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22년 중 본 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24.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 국회 논의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벌금 상한액(2~10억원)을 규정한 여러 법안 중 가장 높은 10억원으로 결정

'25.3.13일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4.7.18. 선고 2022헌가6).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였다.

< 벌금 상한액(10억원) 결정 배경 >

벌금 상한액을 규정한 여러 법안(2억원~10억원)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를 병합심사하였다. 정무위원회 논의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결정하였고,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분식회계의 양태나 죄질 등에 따라 10억원 내에서 구체적 양형 가능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법률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3 [금융위] 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3월 26일)

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6.)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 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참고) 2025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계획의 상세 내용은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후 별도 배포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

- (연혁)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7.10.31일) 이후,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18.11월 규정개정, '19.4월 시행)
- (방법)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되었는지 심사
- (처리) 경미한 회계위반(과실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 이하)로 종결하여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 발견 시 '감리'로 전환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받지만, 상장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되므로, 감리집행기관이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증선위(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 준비 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재무제표 심사**(중대한 회계부정 발견 시 감리 전환)를 수행하며, 심사(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가 기각**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하여 산출하며,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위험도’를 표본선정기준에 이미 반영하고 있음

또한,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에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심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감원·한공회 업무분담 체계 변동 내역 요약 >

구 분	금감원	한공회
기존	·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1조원 이상	·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1조원 미만
변경	·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5천억원 이상	·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5천억원 미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2b376d1a92330ab09dad2665d2f89bf5_img.jpg\)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유예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
 -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3.19~4.28일) 진행중
- ✓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의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
- ✓ 감사인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
- ✓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를 위한 유예근거, 평가기준 규정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 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하여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담았다. 또한,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계약 체결 주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되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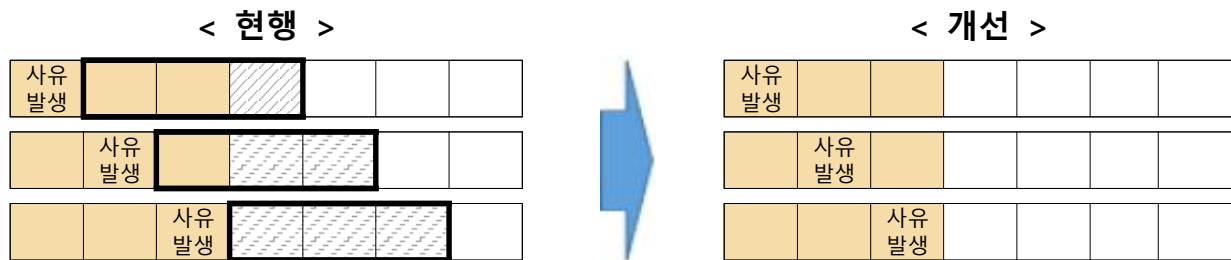
* (예) 회사의 정관 및 내규,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의 확약서 등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 심의 종료시까지 신청 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등을 신설한다.

* (예) 사외이사, 감사인 선임과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②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재의 감사인**(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의 지정감사인에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감사절차 수립·이행시에 **관련 위험을 엄정하게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 (색깔) 주기적 지정기간 (굵은선) 추가지정 대상 (빗금)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 ※ [추가로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는 사유] 재무지표 하락에 따른 재무기준 미달, 대표이사 변경(3년간 3회이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 미흡 및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절차위반 등
- ※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 감리조치, 관리종목 지정, 내부회계 부실운영, 최대주주 변경(3년간 2회이상) 등

③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현재 감사인 지정은 ❶회계법인별로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산출하고 ❷감사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해가면서, ❸**기업이 배정될때마다 일정비율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회계법인을 소속회계사 수,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지정가능 기업을 제한***한다.

* (가군) 모든회사, (나군) 자산 2조원 미만, (다군) 5천억원 미만, (라군) 1천억원 미만

< ①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

감사인 점수	=	소속 회계사 인원수 ¹⁾	×	차감 회계감사 外 매출 비중 ²⁾	×	△감점 품질관리 감리 지적사항 ³⁾	×	+가점 품질관리수준 우수 평가 ⁴⁾
-----------	---	--------------------------------	---	-------------------------------------	---	--------------------------------------	---	--------------------------------------

- 1) (경력별 가중치) 수습 40, ~2년 80, 2년~ 100, 10년~ 110, 20년~ 120, 30년~ 110, 40년~ 100
 2) (회계감사 매출비중별 차감율) 40~50% : 3%, 30~40% : 6%, 20~30% : 9%, 10~20% : 12%, ~10% : 15%
 3) (미이행 권고사항 건별 차감율, 30% 한도) 미구축 또는 미운영 2%, 일부 미구축 또는 일부 미운영 1%
 4) (계량지표 평가결과 가산율) 상위 15% 이내 & 85점 이상 10%, 상위 30% 이내 & 80점 이상 5%

< ②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

$$\text{배정 後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배정 前 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 \times \text{규모별 가중치}^*}$$

* (현행) 자산 2조원 이상은 3배, 5천억원 ~ 2조원은 2배, 5천억원 미만은 1배

< ③ 감사인 群 분류체계 기준 >

군	법인 수	소속 회계사 수	품질관리인원의 기준* 대비 규모	손해배상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
가	4	500인 ↑	140% ↑	1,000억원 ↑	모든회사			
나	14	100인 ↑	140% ↑	100억원 ↑	자산 2조원 미만			
다	21	40인 ↑	120% ↑	10억원 ↑	5천억원 미만			
라	1	그 밖의 회계법인			1천억원 미만			

* (회계사수 40~70명) 1명 (~100명) 2명 (~300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301명~)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 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자산 2~5조원 구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중치 3배 적용)한다. 이러한 개정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 5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감사인 점수를 일정비율로 차감하게 된다.

※ 이러한 가중치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발되었을 때 받는 제재조치 중 하나인 '지정제외점수'를 감사인 지정에 반영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

< 규모배수 변동 전후 >

가중치 (지정제외점수)	자산 5천억미만	5천억~2조원	2조원~5조원	5조원~10조원	10조원 이상
변경전	1배 (20점)	2배 (40점)	3배 (60점)		
변경후	1배 (20점)	2배 (40점)	3배 (60점)	4배 (80점)	5배 (100점)

④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 선택권 보장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 지정기간 연장선택 여부에 따른 감사인 변경 예시 >

20×1	20×2	20×3	20×4	20×5	20×6
감사인 A	A	A	B	현행 C → 개선 B	현행 C → 개선 B
자유선택			직권 지정	(현행) 감사인 교체 → (변경) 감사인 지속 감사	

⑤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 마련

금융위는 '25.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창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 ESG기준원에서 평가하는 지배구조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전체의 약 46.5%에 해당)

※ 현재 공인회계사가 10년 내에 장관급 표창을 받거나, 회계투명성 제고 기여 공적으로 금융감독원 표창 등을 받은 경우 1단계 감경사유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최

- ✓ 지난 방안발표('24.12월) 이후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FAQ 소개 및 현장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신청 및 평가 준비 지원**
- ✓ 시행 첫해인 만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절차 진행

설명회에는 약 110여개사 150여명(사전 파악규모 기준)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현장 Q&A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 ①확약서(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 날인) 및 ②이행계획서(충족근란사유, 이행시기·방법 특정), ③구속력 있는 증빙(정관, 내규 반영 등) 제출시 점수 부여가능 → 미이행시 유예취소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하는 제도

- (지정유예 효과)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

※ 기업 설명회 발표자료 전문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5.13. 국무회의)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5.14. 금융위 정례회의)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내용** → 5.20일 시행예정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기업 평가·선정기준 마련
-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 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
-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을 통해 대형 및 중견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
-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1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5.14.(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5월 20일(개정시행령 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❶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❷ 24년중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붙임1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안)

- 평가기준은 회계·감사와 관련한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
- (5대 분야) ①감사기능 독립성, ②감사기구 전문성, ③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④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⑤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 (17대 항목) 평가분야별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의 효과성,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세부항목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감사기능 독립성 (300)	1) 내부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1인 분리선출 100점, 2인 이상 200점	200
	2) 내부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외부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
감사기구 전문성 (200)	4)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①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250)	7) ①회계·감사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부서 인력 및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지원조직	50
	8) ①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
	10) ②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 등기임원 60 (추가) / 비등기임원 40 / 그 외 0	60
	11) ③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권 * 지원조직 구성원의 평가인사 불이익조치 발생시 1/2내 감점	60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	12)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회계투명성 개선노력(100)	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 평가)	100
[가점] 외부 표창(+50)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최대 50)
[감점] 사회적 물의(-50)	17)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 계		1,000 (최대 1,050)

※ '24.12월 방안 발표 이후 주요 변동사항(상기 표 내 두꺼운 글씨(볼드) 처리)

- ① (회계 지원조직 평가 강화) 기존 '감사지원조직'에서, 재무제표 작성·관리 통제를 담당하는 내부회계 담당인력까지 포함한 '회계·감사 지원조직'으로 평가대상 확대(평가항목 7) 및 8))

* 다만, 평가항목 9) ~ 11)은 여전히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평가됨

- ② (지원조직 위상 관련 평가 강화)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이 비등기임원 이상인 경우 40점을 부여하나, 등기임원인 경우 60점을 부여하도록 배점 상향조정

* 다만, 총점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항목 11)의 배점을 80점에서 60점으로 하향조정

- ③ (지원조직 인사상 독립성 평가 강화) 지원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관련 평가·인사상 불이익 조치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점 60점의 1/2 한도 내에서 감점 신설

붙임2

감사인 지정방식

□ 매월 지정사유 발생 회사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 順으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차례로 배정하되,

* 인원수, 감사부문 매출,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산정하고, 회사가 배정될 때마다 배정받은 감사인의 지정점수가 차감

○ 감사투입여력, 품질수준 등을 고려한 감사인 群을 분류하여 群마다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예,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가' 群만 가능)

1 지정대상 선정	2 회사군 분류	3 감사인군 분류	4 감사인점수 산정	5 회사⇔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 발생 - 월별지정 실시	- 자산규모 구분 - 큰순서대로 나열	3개 구분요소 - 총족여부 판단	- 인원수*경력점수 - 가산/차감요소	$\frac{\text{감사인점수}}{1 + \text{지정수} \times \text{규모}}$ - 순위대로 매칭

① 감사인 군(群) 분류기준 (외감규정 별표4)

■ 현재 회계사 수, 품질관리담당인력 비중, 손해배상능력 및 품질관리 감리·평가결과 고려

군	법인수	소속 회계사 수	품질관리인원의 기준* 대비 규모	손해배상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
가	4	500인 ↑	140% ↑	1,000억원 ↑	모든회사			
나	14	100인 ↑	140% ↑	100억원 ↑	자산 2조원 미만			
다	21	40인 ↑	120% ↑	10억원 ↑	5천억원 미만			
라	1	그 밖의 회계법인			1천억원 미만			

* (회계사수 40~70명) 1명 (~100명) 2명 (~300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301명~)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②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외감규정 별표3)

감사인 점수	=	소속 회계사 인원수 ¹⁾	×	차감 회계감사 외 매출 비중 ²⁾	×	△감점 품질관리 감리 지적사항 ³⁾	×	+가점 품질관리수준 우수 평가 ⁴⁾
--------	---	--------------------------	---	-------------------------------	---	--------------------------------	---	--------------------------------

- (경력별 가중치) 수습 40, ~2년 80, 2년~ 100, 10년~ 110, 20년~ 120, 30년~ 110, 40년~ 100
- (회계감사 매출비중별 차감율) 40~50% 3%, 30~40% 6%, 20~30% 9%, 10~20% 12%, ~10% 15%
- (미이행 권고사항 개수별 차감율) 미구축 또는 미운영 2%, 일부 미구축 또는 일부 미운영 1%
- (계량지표 평가결과 가산율) 상위 15% 이내 & 85점 이상 10%, 상위 30% 이내 & 80점 이상 5%

③ 배정후 감사인 지정점수 [외감규정 별표3]

$$\text{배정 후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배정 前 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 \times \text{규모별 가중치}^*}$$

*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은 3배 / 5천억원 ~ 2조원은 2배 / 5천억원 미만은 1배

(⇒ 2조원 이상 구간을 2~5조원 3배, 5~10조원 4배, 10조원 이상 5배 구간으로 세분화)

** 감리조치 등에 따른 해당 지정제외점수 : 2조원~ 60점, 5천억원~2조원 40점, ~5천억원 20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7 [금융위] 7.22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강화 (5월 21일)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 ✓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5.1.21. 공포, 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25.7.22.(화)부터 시행된다.

※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25.7.22. 시행) 주요 내용

- 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추가
- ②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現) 발행 결정 다음날까지('납입기일 직전' 발행공시 가능) → (改)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
- ③ 5%를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5%를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시가총액의 10만분의1 → (改)시가총액의 만분의 1)
(상장법인 사업보고서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 10%~20억원 → (改)10억원~20억원)

시행일 이후 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 또는 ②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40건, 19.2억원 지급('19년~'25.5월말 기준)
- 제도개선 후 회계부정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신고내용도 구체화
- 신고자 중 내부자가 65%로 대다수, 거래처(15%),주주(10%),기타(5%) 順
-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건 중 75%가 고의·중과실로 중징계 조치 부과
-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로 기업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만큼,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처리·회계감사에 만전을 기할 필요

1 제도개요 및 현황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8⑤)」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회계부정 신고 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회계부정 신고제도 운영 성과

금융위원회는 '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최대 10억 → 최대 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5월)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피신고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에 따라 결정)

이러한 노력 등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4년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고받은 내용은 순차적으로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제재조치 확정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회계부정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5월말
신고건수 ¹⁾	81	105	125	130	141	179	72
포상금 지급건수	1	12	5	3	8	7	4 ²⁾
포상금 지급액 (단위: 백만원)	107.6	408.4	228.6	69.5	250.5	407.0	450.0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건 및 유관기관(국민권익위 등) 이첩건 합계

2) '25.5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지급된 건은 제외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 (약 65%)이며, 그 뒤를 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되었고,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7억원에 달합니다.

회계부정 신고건 관련 연도별 인적·기관제재 및 과징금 부과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5월말
인적제재 ¹⁾ (명)	임직원	2	16	13	2	14	8	14
	회계사	8	40	14	8	8	5	9
기관제재 ²⁾ (건)	회사	1	11	5	2	8	7	5
	감사인	2	10	6	3	4	2	5
과징금 부과액 (억원)		81.9	37.9	50.8	5.3	15.3	30.8	26.6

1) 회사 임직원: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과징금, 검찰고발 등 / 회계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직무연수 등

2) 회사: 감사인 지정, 과징금, 검찰고발 등 / 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지정제외점수 부과, 과징금 등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 A사는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이미 출고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비용) 인식을 누락하고 회사 전산시스템 및 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였음.
- ☞ 甲은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였고, A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받았으며 甲에게 증선위 심의를 거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이 지급됨.

3 신고자 보호조치 및 당부

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공익신고자보호법」§12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부감사법」§43, §47①)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처리 과 정에서 **내부 임직원 및 감사기구**(감사위원, 상근감사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주요 내용〉

- ◆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4건)
- ◆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과거 5년('18~'22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약 30건)의 절반 수준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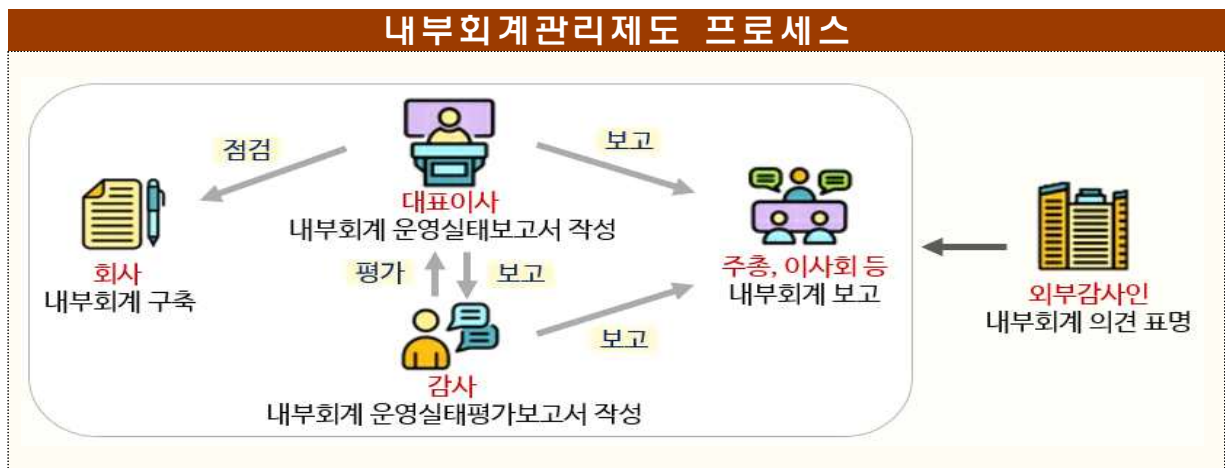
- ☑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청**하는 등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념)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



- (위반시 제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II. 2023 회계연도 점검 결과

▶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 조치 결과 회사(600~1,200만원),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재무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거 5년 평균 30건('18년: 28건 → '19년: 41건 → '20년: 56건 → '21년: 10건 → '22년: 14건)

III.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회사 유의사항

① (내부회계 미구축)

비상장법인이라면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상장법인이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3)금융회사

위반 사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1천억원 이상)인 A사는 '22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었으나 '23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서 제외되어 '23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인

② (회생절차 신청)

신청 중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습니다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반 사례

- B사는 '23년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운영('24년에 회생절차 개시)

③ (내부회계 인력 확충)

내부회계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세요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 등)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제도의 설계, 실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였으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이 대부분 퇴사하였음에도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④ (대표자·감사의 보고)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를 보고하고 기록하세요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D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 감사인 유의사항

① (감사인 의견 표명)

대상 회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견을 표명하세요

-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감사 또는 검토)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 내부회계 미구축,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E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고 회사가 내부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

IV.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①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23.5월)되었으나, **예외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니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2 [회사, 감사인]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법인은 '25회계연도로 유예되었음

- 또한 외부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3 [회사] 2024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화(제3조의2)되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2024 회계연도에 한해 기존의 자율규정*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25 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장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등

V.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202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재무제표 감리시, ①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검토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범규준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한국상장회사협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174>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k-icfr.org/sub/menu/data.asp>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음

√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감리절차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확대 및 내부심의절차 강화
- (상장 전후 감독 강화) IPO예정기업 및 상장 직후 기업에 대한 심사강화
- (한계기업 감시 강화)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심사확대

② 제반 환경·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

- (시스템화) 감리 쏠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
- (제재기준 개선) 다수 회계연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추진
- (의의성 반영)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26년 테마심사 항목 선정·발표

③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감리방식 개편) 감사인별 시장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감리주기 차등화
- (조치 합리화) 등록요건,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 개편 추진
- (내부통제 감독강화) 통합관리 점검 지속 및 지배기구 감독강화 방안 검토

√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에 따라 상장회사 등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 160사,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 실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 -**

◆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4년 중 30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기한)**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위반시 제재)**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 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합니다.

1

제도내용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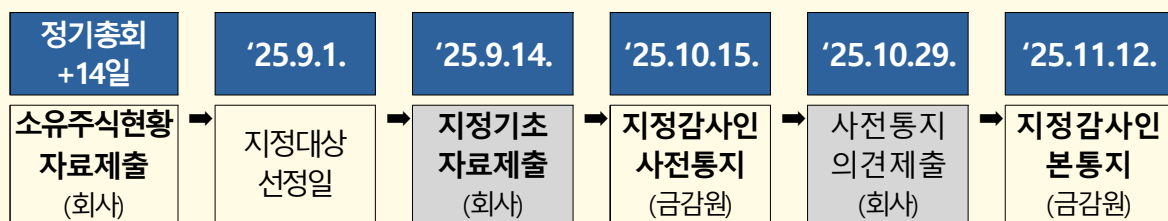
* ①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목적)**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택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25년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일정(안)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가 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①공문, ②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③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④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참조

- **(위반 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 가능(외부감사법 §29①제2호)

2

유의사항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 ②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25.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4.까지)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되,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 (외부감사규정 §15③)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

- ①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전화문의 : (02) 3145-7761/797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임 필요 -

◆ 금융감독원은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 √ '25.4.11.(금) 유튜브 (금융감독원 공식채널), 금융감독원 (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KOTRA 외국인투자옹부즈만 (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 √ '25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법정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선임제도)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

*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 ② 외부감사인 선정 →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 ④ 외부감사 사후평가

□ (전자보고요령)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 (붙임 참조)

*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http://eacrs.fss.or.kr>)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설명회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감사인 선임제도	-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판단기준 - 감사인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 - 감사인 선정기준, 선정주체 - 감사인 선임보고, 사후평가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방법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소개 - 고유번호 발급방법 -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방법

- 유튜브*, 금융감독원(www.fss.or.kr) 「업무자료-회계」,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정보마당-유관기관 공지」,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알림마당」에 동영상 등 게시

* 검색어 '금융감독원', www.youtube.com/fsskorea

- 아울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전화문의 : (02) 3145-7767/7763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13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5월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 외부감사 방해 또는 감리 방해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주 요 내 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 * 감리 방해: '19~'23(0건) → '24년이후(4건), 외부감사 방해: '19~'23(연평균 2.6건) → '24년(6건)
- ☑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 토록 **한공화·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하여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겠습니다.

구 분	조치사례 요약		
감리 방해	A사	허위자료 제출	➡ 과징금 가중 (부과비율 4%→6%, 2%p ↑ (+0.7억원)) 및 검찰고발
	B사	자료제출 거부	➡ 과징금 가중 (과징금 가중 15% ↑ (+35.7억원)) 및 검찰통보
	C사	자료 지연제출	➡ 과징금 가중 (부과비율 4%→6%, 2%p ↑ (+2.2억원)) 및 검찰통보 대상 추가
외부감사 방해	D사	허위자료 제출	➡ 검찰고발
	E사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	➡ 검찰고발

I. 외부감사 · 감리 방해 개요

1 외부감사 방해 ➡ 벌칙(징역 · 벌금)

- (개요 및 제재)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2 감리 방해 ➡ 벌칙(징역 · 벌금), 행정조치

- (개요)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의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제출한 경우도 자료제출 기피에 해당(서울고법 2008누16614)

- (제재) 감리를 방해한 회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가중 등의 행정조치

-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벌칙(회사와 동일) 및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

< 감리 방해에 대한 조치 >

구 분	조치 내용	근거 규정
벌 칙 (회사 감사인)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외부감사법(제42조)
행 정 조 치 (회사)	• MAX [회계위반 조치 1단계 가중, 고의Ⅱ단계 상당* 조치] *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검찰고발(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최대 50% 가중(외부감사법) • 과징금 부과비율 100분의 2 가산*(자본시장법) * 과징금 부과액 기준 25 ~ 100% 가중효과	• 외감규정 세칙(별표1, Ⅲ.6) • 외감규정(별표7)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2)
행 정 조 치 (감사인)	• (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고발 • (공인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1년	• 외감규정 세칙(별표1, Ⅲ.6)

※ 조사를 수행하는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등 벌칙 외에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조치를 병과하고 있음

Ⅱ. 회사의 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1

허위자료 제출

➡ 과징금 가중(+0.7억원, 48.3%↑), 검찰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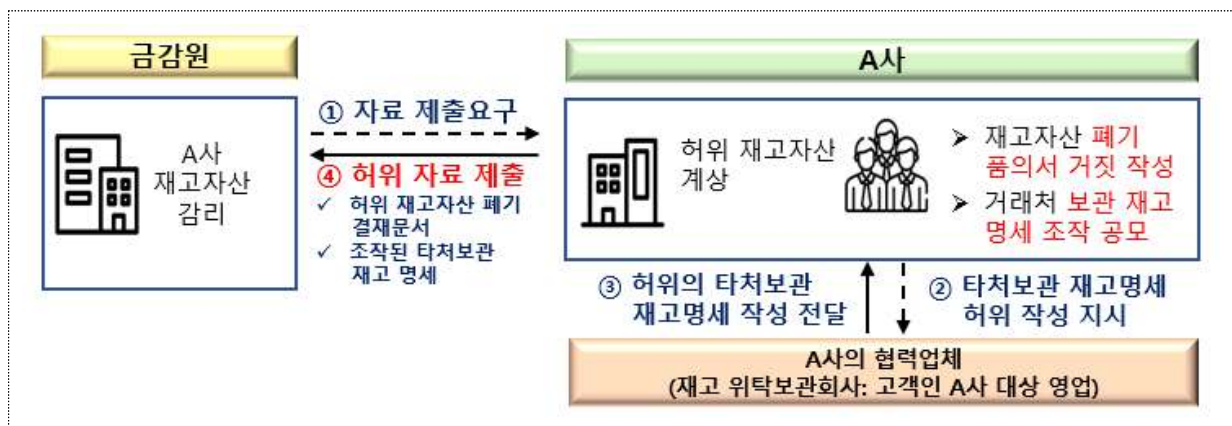
□ (주요내용) 금감원의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 제출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대표이사 결재)하고 실사내역을 위조*하거나, 거래처(재고 위탁보관회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

* 재고실사 시 감사인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입회한 것처럼 기재

<A사의 허위자료 제출 과정>



□ (조치) 감리 방해(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A사 조치

회계위반 조치	감리 방해 가중 後 조치	비고
- 과징금 - 검찰통보 -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 과징금 가중(+0.7억원) - 검찰고발 - 좌동	- 과징금 부과비율 상향 (100분의 4 → 100분의 6) ‘통보’ → ‘고발’

➡ A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0.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

2

자료제출 거부

➡ 과징금 가중(+35.7억원, 15%↑), 검찰통보

□ (주요내용)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 B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진행률 추정과 관련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

□ (조치) 감리 방해(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B사 조치

회계위반 조치	감리 방해 가중 後 조치	비고
• 과징금	• <u>과징금 가중(+35.7억원)</u> • <u>검찰통보</u>	• 기본과징금 15% 가중 • 위법동기는 중과실이나 자료제출 거부로 <u>검찰통보</u> 추가
•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 좌동	

➡ B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35.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회계위반 동기가 중과실임에도 검찰통보 조치 추가

3

자료 지연제출

➡ 과징금 가중(+2.2억원, 14.9%↑), 검찰통보 대상 추가

□ (주요내용) 금감원의 혐의사항 관련 회계자료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요구에 대해

- C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 수령 이후 일부자료 제출

□ (조치) 감리 방해(자료 지연제출)에 대한 C사 조치

회계위반 조치	감리 방해 가중 後 조치	비고
• 과징금	• <u>과징금 가중(+2.2억원)</u>	• 과징금 부과비율 상향 (100분의 4 → 100분의 6)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前임원, 前팀장)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前임원, 前팀장, <u>現임원</u>)	• 現임원# 검찰통보 추가
•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 좌동	# 회계위반의 책임은 없으나 '감리방해 행위자'

➡ C사의 자료 지연제출에 대하여 2.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감리 방해의 주도적 역할을 한 現임원을 검찰통보 대상에 추가

Ⅲ.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1 허위자료 제출 ➡ 검찰고발*

* 외부감사 방해행위를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

□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 D사는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S제품)을 외국법인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을 위조하고
- 납품한 S제품을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경유하여 재매입*한 후 다른 용도의 새로운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재된 품목명을 변경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조립된 완제품 1개를 2개 피스로 단순분해하여 새로운 원재료로 위장

<D사의 허위자료 제출 과정>



□ **(조치)**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

2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 ➡ 검찰고발

□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 E사는 허위 매출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

□ **(조치)**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

IV. 향후 계획

-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공회,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
- 또한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

* 회계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회계 관련 위법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포상금 제도(최대 20억원) 운영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회계부정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14 [금감원] '24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5월 22일]

'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지정회사 수 증가에도 상장법인에 대한 지정은 3년 연속 감소 -

-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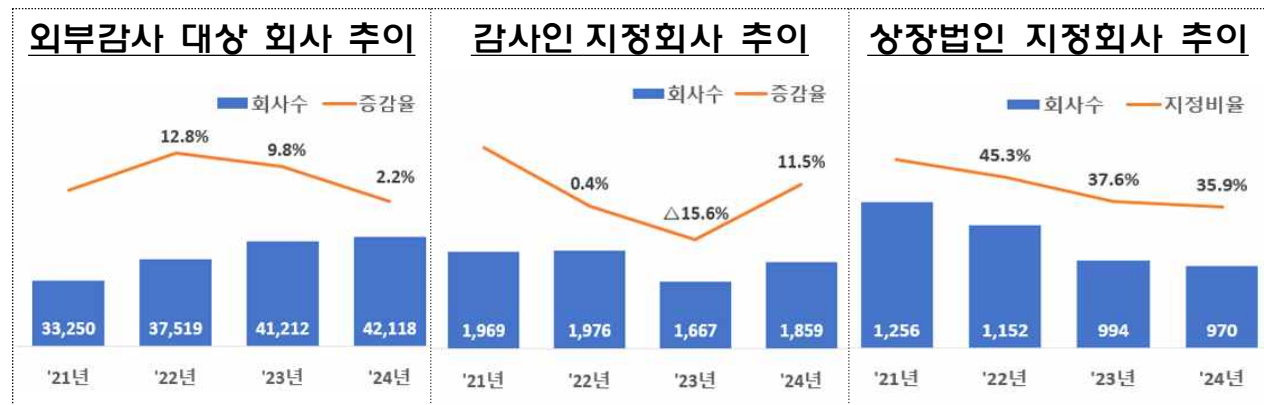
◆ '24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2,118사로 전년 (41,212사) 대비 906사 증가 (2.2%↑)하였습니다.

✓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율(2.2%)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하회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 '24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859사로 전년 (1,667사) 대비 192사 증가 (11.5%↑)하였습니다.

✓ 직권 지정은 증가(233사, 21.3%↑)하였으나, 주기적 지정은 지정 사유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41사, 7.2%↓)하였습니다.

◆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70사) 및 지정비율(35.9%)은 3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I '24년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회사 유형) 주식회사 중 비상장주식회사가 38,774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은 2,705사(6.4%)이며, 유한회사는 639사(1.5%)임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상장)	합 계
	주권상장				비상장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3년 (비중)	833 (2.0)	1,680 (4.1)	129 (0.3)	2,642 (6.4)	37,947 (92.1)	40,589 (98.5)	623 (1.5)	41,212 (100.0)
'24년 (비중)	839 (2.0)	1,747 (4.1)	119 (0.3)	2,705 (6.4)	38,774 (92.1)	41,479 (98.5)	639 (1.5)	42,118 (100.0)
증감 (증감률)	6 (0.7)	67 (4.0)	Δ10 (Δ7.8)	63 (2.4)	827 (2.2)	890 (2.2)	16 (2.6)	906 (2.2)

- 전체 외부감사 대상(42,118사) 중 30,159사(71.6%)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7,152사(17.0%)는 변경*

* 나머지 4,807사(11.4%)는 초도 감사로 감사인을 신규 선임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선임 비중(37.0%)은 주기적 지정제의 영향으로 비상장사(15.6%)의 두 배를 상회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단위: 사, %)

구 분	상장 (비중)	비상장 (비중)	합 계 (비중)
계속 선임	1,662 (61.4)	28,497 (72.3)	30,159 (71.6)
변경 선임	1,001 (37.0)	6,151 (15.6)	7,152 (17.0)
신규 선임	42 (1.6)	4,765 (12.1)	4,807 (11.4)
합 계	2,705 (100.0)	39,413 (100.0)	42,118 (100.0)

II '24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24년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4%로서 전년(4.0%)보다 소폭 상승(0.4%p ↑)하였으나, 4% 수준을 유지
-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970사이며, 지정비율은 35.9%로서 新 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21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지정제도 개선 효과로 '22년부터 3년 연속 하락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개선사항

'20년 주요 개선사항

- ☑ **(직권 지정)** 부채비율 과다 지정사유 폐지(①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직권지정 대상)

'23년 주요 개선사항

- ☑ **(주기적 지정)**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
- ☑ **(직권 지정)** ①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 보장, ② 재무기준 수치산정 재무제표 변경 (연결→별도), ③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폐지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

(단위: 사, %, %p)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a)	'24년(b)	증감(c=b-a)
전체	지정회사(A)*	1,224	1,521	1,969	1,976	1,667	1,859	192
	전체 외감(B)	32,431	31,744	33,250	37,519	41,212	42,118	906
	지정비율(C=A/B)	3.8	4.8	5.9	5.3	4.0	4.4	0.4
상장	지정회사(A)*	807	1,060	1,256	1,152	994	970	△24
	전체 상장사(B)	2,326	2,382	2,457	2,542	2,642	2,705	63
	지정비율(C=A/B)	34.7	44.5	51.1	45.3	37.6	35.9	△1.7

* 지정시점 기준 예) '24년에 '25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4년 지정회사로 간주하고 계산

- ① **(주기적 지정)** '24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사로 전년(571사) 대비 41사 감소(7.2% ↓)

- '23년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상향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소폭(△24사, 44.4% ↓)이 주권상장법인(△17사, 3.3% ↓)보다 2년 연속 크게 상회

주기적 지정 현황

(단위: 사)

'23년(a)			'24년(b)			증감(증감률)(c=b-a)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571	517	54	530	500	30	△41 (△7.2%)	△17 (△3.3%)	△24 (△44.4%)

- '24년 주기적 지정회사 중 연속 지정은 341사(상장 317, 비상장 24)이며, 신규 지정은 189사(상장 183, 비상장 6)

연속·신규 주기적 지정 내역

(단위: 사)

상장(a)			비상장(b)			합계(c=a+b)		
전체	연속	신규	전체	연속	신규	전체	연속	신규
500	317	183	30	24	6	530	341	189

- ② (직권 지정) '24년 말 현재 직권 지정회사는 1,329사로 전년(1,096사) 대비 233사 증가(21.3% ↑)

-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88사로 가장 많고, 감사인 미선임(298사), 재무기준 미달(184사), 관리종목(155사) 등의 順

사유별 직권 지정 현황*

(단위: 사, %)

구 분	'23년(a)			'24년(b)			증감(c=b-a)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상장예정법인	466	18**	448	488	18**	470	22	-	22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69	169	-	184	184	-	15	15	-
관리종목	148	137	11	155	135	20	7	△2	9
감사인 미선임***	88	-	88	298	-	298	210	-	210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60	60	-	54	54	-	△6	△6	-
감리조치	40	21	19	45	25	20	5	4	1
회사요청	46	43	3	43	34	9	△3	△9	6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34	10	24	12	8	4	△22	△2	△20
횡령·배임 발생	19	18	1	11	10	1	△8	△8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10	-	10	8	1	7	△2	1	△3
기타	16	1	15	31	1	30	15	-	15
합 계	1,096	477	619	1,329	470	859	233	△7	240
(증감률)							(21.3)	(△1.4)	(38.8)

* 지정 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 지정 사유로 분류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코넥스 상장사 등

***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한 점검 강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지정회사 수 증가

□ '24년 감사인 지정대상 1,859사에 대하여 51개 회계법인('23년 53개 회계법인)을 지정

-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속한 가군은 1,018사(54.8%)로 전년(851사, 51.0%) 대비 167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3.8%p 증가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p)

구 분	'23년		'24년		증감	
	회사수(a)	비중(b)	회사수(c)	비중(d)	회사수(e=c-a)	비중(f=d-b)
가군(Big 4)*	851	51.0	1,018	54.8	167	3.8
그 외**	816	49.0	841	45.2	25	△3.8
합 계	1,667	100.0	1,859	100.0	192	-

* 종전 감사인 지정 점수 체계가 '가'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외부감사규정을 개정('25.5.20. 시행)하여 지정방식을 합리화하였고, '25.4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운영 중인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에서 감사인 지정기준 및 방식을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 추진 중에 있음

** '23년 49개 회계법인, '24년 47개 회계법인

III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 등이 외부감사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제고하면서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금감원]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5월 27일]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

〈 주 요 내 용 〉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

(중조치는 증선위·금융위 의결)

-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하였으며,
-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과징금 부과액: '19년~'21년 356억원(연평균 119억원) → '22년~'24년 772억원(연평균 257억원)

◆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2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 '22년도 이후 공개를 확대('22년 15건 → '23년 18건 → '24년 27건)하고, '11년 이후 총 182건 공개

-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회계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 심사·감리 실적

- (개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년~'24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3년간 458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22사**를 **검찰고발**하는 등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심사·감리 현황

(단위: 사,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2~'24년	'19~'21년
심사·감리 합계	160	133	165	458	431
심사*	136	113	130	379	273
감리**	24	20	35	79	158
중조치					
과징금(건수)	17	15	20	52	63
과징금(금액)	260	91	421	772	356
검찰고발·통보	6	7	9	22	26

* (심사) 공시자료 검토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 소명을 듣고, 경미한 위반(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권고하여 회사가 수용하면 **경조치(금감원장) 종결**

** (감리) 수정권고 불수용, 중조치, 제보 등 혐의사항은 감사인까지 위반 여부 검토

II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융감독원은 '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습니다.
- 이번에 공개하는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4사)이었으며, 주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사)

공개 시기		'25.5월	'24.9월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조치 시기		'24.하	'24.상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 '19년	'15년~ '17년	'11년~ '14년	'11년~ '24.하
지 적 유 형	① 매출매출원가	4	2	6	3	4	4	5	12	4	44
	② 투자주식	1	4	-	4	3	4	5	6	4	31
	③ 재고·유형자산	-	2	2	3	3	-	1	5	7	23
	④ 기타자산·부채*	7	4	4	5	2	8	2	5	7	44
	⑤ 주식 미기재 등	2	1	2	3	3	11	2	9	7	40
지적사례 수(합계)		14	13	14	18	15	27	15	37	29	182

* (예시)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리스기간 산정 오류, 금융부채 미인식,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등

-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주로 지난 3년간 역량을 집중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적발 및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기업의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 정정을 유도하는 **테마심사** 등의 심사 사례도 포함하였습니다.

< 중선위·금융위 주요 조치사례 >

사례	구분	내용
사례1	IPO예정기업	IPO 목적으로 재무성과를 인위적 으로 조작한 기업에 대하여 검찰고발·과징금 등 중조치 를 부과
사례2	현장조사	회사의 허위매출 관련 미판매 재고를 현장 에서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 할 자료 를 확보
사례3	한계기업	상장폐지 를 회피 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허위계상한 한계 기업 에 대하여 거래소에서 거래정지 할 수 있도록 함
사례4	과징금	중대한 회계 위반에 역대 최대규모 의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
사례5	테마심사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여 오류를 예방 하고, 오류 항목은 신속 점검으로 회계정정을 유도

- (👉 붙임1)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 별첨)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 금융감독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
- ◆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투자자 약정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유통업, 제조업)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제목: '25.3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K-IFRS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K-IFRS 정규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음

*1)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20.5월)'의 일환

*2) ❶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❷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3월 31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24년 상반기에 회신한 신속 질의회신 요약(12건)을 공개함

○ 해당 질의회신 요약에는 K-IFRS 신속 질의회신의 질의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제 목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1.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4월 15일(화)에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과 그 쟁점 사항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함

2. 발표 내용

- 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쟁점사항, 향후 일정을 소개하였음
-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구분하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독자적으로 정의해 사용해 오던 ‘영업손익’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영업손익을 정의함
 - 또한 미국 및 유럽의 실무와 유사하게 기업이 정보이용자와의 소통에 활용할 목적으로 성과측정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해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함
- (주요 쟁점사항) K-IFRS 제1118호 공개초안에서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영업손익에 추가하여, 정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영업손익

(경상영업손익* 또는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식별됨

* K-IFRS 제1118호 공개초안에 따른 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 항목을 제외한 영업손익으로 정의

- (그 밖의 쟁점사항) 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의 식별 및 공시, ② 회계시스템 구축, ③ 지분법손익의 투자 범주 구분에 따른 비금융지주사의 우려사항이 소개되었음
- (향후 일정) 회계기준원은 4월 말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산업별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토론 내용

- 작성자(기업) 4인, 감사인(회계법인) 1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인, 금융감독원 팀장 1인, 시스템구축회사 1인이 토론에 참석했으며, 토론자들은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개초안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기업의 주요 활동별 성과를 구분해 평가하기는 용이하지만 경상적인 영업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따라서 경상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이를 추가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감사인(회계법인) 측 토론자는 새 기준서의 도입 초기에는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추가로 주석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 다만,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향후 공개초안에 따른 영업손익만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

- 일부 작성자(기업) 측 토론자들은 공개초안에 따른 영업손익만을 손익 계산서에 표시하더라도 회사가 필요에 따라 MPM을 활용하고 투명한 공시를 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음
- 한편, 재무제표이용자와 회사가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에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추가로 주석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다른 작성자(기업) 측 토론자도 있었음
- 금융감독원 팀장은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MPM을 적극 활용하고, 회계시스템 변경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새로운 기준서가 큰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업무 보고서 양식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세미나는 K-IFRS 제1118호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주요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회계기준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제목: '25.6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기업회계기준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음

*1)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20.5월)'의 일환

*2) ❶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❷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6월 30일, 질의회신 요약(16건)과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4건)를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함*

* (붙임) '25.6월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목록 참조

- **(질의회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25년 상반기에 회신한 일반기업 회계기준 정규 질의회신(1건), 2024년 하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8건),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신속 질의회신(7건)

- 질의회신 요약에는 질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IFRS IC 논의결과)** IFRS 해석위원회가 2024년 11월~2025년 4월에 발표한(Compilation of Agenda Decisions Volume 12) 특정 회계 이슈의 논의 결론 및 근거를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5ed4e929f29e555498ea58f609acf062_img.jpg\)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제목: 2024년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 공개

- 한공회는 매년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 감사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적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음
- 2025년 1월 10일, 한공회의 「2024년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한공회 홈페이지 //회계·감사→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유의사항](#)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함

■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조치실효성 강화**

- (고위험 기업 감독강화)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엄중 조치 건의
- (선정기준 정비) 고위험 회사 선정지표의 정교화·고도화

② 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 **심사·감리대상 선정의 내실화**

- (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 장기 미심사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 우선 선정
- (감독의 효율성 제고)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 연계 선정

③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업무의 고도화**

- (심사·감리 효율성 제고) 심사·감리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운영
- (심사·감리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감리기법 등을 심사·감리에 활용

④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 연장·확대 실시 등 감사품질 제고**

- (핵심요소 확대) 기획감리대상 핵심품질요소에 '감사시간 관리·사후심리' 추가
- (감리주기 차등) 기획감리 결과 우수·미흡 감사인 감리주기 차등화

⑤ **Communication 활성화**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 (핵심요소 안내) 주요 품질관리절차 사전안내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 유도
- (소통강화) 지적사례·유의사항 수시안내 등 사전 예방중심의 감독 실현

✓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에 따라 비상장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270사, 일반회계법인 50사, 감사반 20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한공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는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에 공동으로 의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분석과 실무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도 함께 마련되었으며, 세미나에서는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금융당국, 회계법인, 기업,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7c2b9810f9235b80f896ccb0dcbb3827_img.jpg\) **한공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제 목 : 2025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6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 회사 및 감사인은 해당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
 -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 회계정책 수립
 - 매 보고기간 말 장기미회수 채권 손상검토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여부 및 연결 대상 종속기업의 파악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 일치
 -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을 모두 제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요건 검토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고려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 등)
 - 이연법인세부채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국외매출 회계처리

- ❖ 계약조건 및 거래의 실질 등을 반영하여 수익인식
 -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해외자회사 등과의 거래 주석공시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 [한공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참고](#)